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국고보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미반영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울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·소과 생산체계 확립, 소비자 기호 및 수출시장에 적합한 물량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“2016~2018년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·소과 생산시범사업”을 추진하였다.

「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르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·학 협동심의회¹⁾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28조7항에서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,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.

1)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정(대통령령 제25179호) 제2조(설치) 농업산·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·특별자치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도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(이하 "도 심의회"라 한다)를,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자치시·시·군(이하 "시·군"이라 한다)에 시·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(이하 "시·군 심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따라서 울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는 시범사업 신청자중 적정한 사업대상자를 선발 할 때에는 규정에 따른 선정심의회에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7년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·소과 생산시범사업(사업비 100백만원/년, 3년 계속사업(2016~2018년))을 추진하면서, 2017. 1. 11. 사업공고를 통하여 ○○○○○○○회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,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에 반영하지 않고, 사업대상자로 확정 추진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주의]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대상자를 선정심의회하여 주시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